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13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임종득·김예지·이헌승

인요한 • 조승환 • 김기웅

이상휘 • 우재준 • 박형수

윤한홍 · 김상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함)를 사용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드론 테러 위협 증가로 비물리적 타격수단인 전파차단 장치의 전력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군사활동 자체뿐만 아니라 군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의 목적으로도 전 파차단장치를 운용하여야 할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

음.

이에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군사활동 및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의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안전을 위한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제3항).

법률 제 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2호 중 "군사활동"을 "군사활동 및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의 활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테러활동"을 "대테러활동 및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의 활동"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① · ②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① · 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③
고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또는 조치 등의 범위	
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및 폭	
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	
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	
차단장치"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2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	
사활동	군사활동 및 이와 관련된 교
	육·훈련·장비정비 등의 활
	<u>동</u>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	3

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u>대테러활동</u>

------<u>대테러활동 및 이와</u> 관련된 교육·훈련·장비정 비 등의 활동

4. ~ 6. (생 략)

④ ~ ⑦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